

2021년 3월 2일

보도참고자료

이 자료는 3월 3일(수) 조간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 단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 3월
2일(화) 12:00부터 취급 가능

제 목: G20 「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」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

□ 최근 글로벌 교역 확대, 국외 이주노동자 수 증가로 국외 송금 등
‘국가간 지급서비스’의 효율성 제고가 주요 이슈로 부각

* 개인 혹은 기업 등의 지급인이 타국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의미

○ 지급 과정에서 다양한 환(FX)거래은행의 개입과 국가간 상이한 규
제로 고착된 **고비용 송금방식을 저비용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**

○ 국제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**금융포용 차원**에서 저개발국 이주노동
자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논의가 활발

□ 2020년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“국가간 지급서비스의
효율성 개선”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BIS 등 국제기구
TF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방안 및 종합 추진 로드맵을 발표

□ 중장기(2~5년) 시계의 개선방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
국외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우리나라 외국환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
민간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

○ 국제기구가 추진하게 될 ‘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’의
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

(자세한 내용은 “붙임” 참조)

문의처 : 금융결제국 국제결제협력반장 박준홍(☎750-6618), 과장 한명진(☎ 750-6548)

Email : emeap.wgpmi@bok.or.kr

공보관 : Tel : 02-759-4028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
BANK OF KOREA

<붙임>

G20 「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」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

2021. 3

※ 국제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링크를 참조

<https://www.fsb.org/2020/04/enhancing-cross-border-payments-stage-1-report-to-the-g20/> (1단계 보고서 – 현황과 문제점)

<https://www.bis.org/cpmi/publ/d193.htm> (2단계 보고서 – 세부 개선방안)

<https://www.fsb.org/2020/10/enhancing-cross-border-payments-stage-3-roadmap/>
(3단계 보고서 – 개선방안 추진 로드맵)

한국은행 금융결제국



〈 요약 〉

- I. 논의배경1
- II.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2
(G20 1단계 보고서)
- III.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과 추진로드맵5
(G20 2·3단계 보고서)
- IV. 국제기구 개선방안의 세부내용 및 일정7
 - 1.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 연계 추진 7
 - 2. ISO 20022의 글로벌 도입안 마련 9
 - 3.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 10
 - 4.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12
 - 5. 외환동시결제(PvP) 활성화 추진 15
 - 6.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 16
 - 7.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 자격 확대 검토 18
 - 8.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19
 - 9.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23
 - 10. CBDC 설계 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 25
- V. 향후 조치 및 계획26

〈 참 고 〉

- 1. 환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기존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문제점4
- 2. 국외담보수용제도14
- 3.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례24

〈 별 첨 〉

- 1. 환거래은행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27
- 2. 최근 글로벌 송금 프로세스 혁신 모델28
- 3. FSB 주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30

< 요약 >

I. 논의배경

- 최근 글로벌 교역 확대, 해외 이주노동자 수 증가(2019년, 2.7억명)로 국외 송금 등 국가간 지급서비스(cross-border payments)* 효율성 제고가 국제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

* 개인 혹은 기업 등의 지급인이 타국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의미

- 환(FX)거래은행의 개입과 국가별 상이한 규제 등으로 고착된 **고비용 송금방식***을 **저비용 방식**으로 바꿈으로써 **국제화를 지원하고 금융포용 차원에서**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**협력 논의**가 증가

* 국외 송금 시 송금비용은 송금금액의 7% 수준(국내 송금비용의 10배)이고 소요 기간도 최장 7일에 달하는 등 국내송금시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

- 2020년 2월 G20 중앙은행 총재·재무장관 회의는 “**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**”을 최우선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기구에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

- 이에 BIS, FSB 등 국제기구 TF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**개선방안**(2020.7월)과 **종합 추진 로드맵(10월)**을 발표하였으며 금년부터 중장기 시계(2~5년)에서 본격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

II.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문제점

- 국제기구(FSB)는 환거래은행이 주도하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**4대 문제점**으로 국내 지급서비스에 비해 ① **비싼 수수료**(high-cost), ② **느린 처리속도**(low-speed), ③ **접근성의 제약**(limited access), ④ **낮은 투명성**(limited transparency)을 지적

국가간 지급서비스의 4대 문제점

[주요 마찰 원인]



[4대 문제점]



Ⅲ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과 로드맵

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 추진계획

| 5대 중점추진 분야 | 개선방안 (19개) | 실행 시기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 '25 |
| A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 |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 | | | | | | |
| | 지급결제 국제기준 정비 및 강화 | | | | | | |
| | 지급서비스 수준의 표준화 추진 | | | | | | |
| B 국가간 지급서비스 규제감독 및 감시 체계의 조화 | 규제체계 일관성, 상호연계성 강화 | | | | | | |
| | 자금세탁방지(AML)·테러자금조달금지(CFT) 적용방식의 일관성 제고 | | | | | | |
| | 국가간 지급서비스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| | | | | | |
| | 안전한 지급경로(corridor) 발굴 및 장려 | | | | | | |
| | 고객확인정보(KYC) 국가간 공유체계 마련 | | | | | | |
| C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의 개선 | 외환동시결제(PVP) 활성화 | | | | | | |
| |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격 확대 검토 | | | | | | |
| |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| | | | | | |
| |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| | | | | | |
| |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 연계 추진 | | | | | | |
| D 지급결제 정보의 표준화 추진 | ISO20022의 글로벌 도입안 마련 | | | | | | |
| |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 | | | | | | |
| | 거래 상대방 고유 식별기호 도입 | | | | | | |
| E 혁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 모색 |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| | | | | | |
| |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| | | | | | |
| | CBDC 설계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 | | | | | | |

○ (개선방안의 성격) G20 회의의 **공동 실행합의안(coordinated action plan)** 으로 **회원국에 협조 의무가 부여**되나 국가간 **지급결제환경의 특수성**을 고려하여 회원국에 **재량권(flexibility)**을 인정

○ (각 회원국에의 영향) 각국의 **중앙은행과 감독기구** 등이 국가간 지급의 국제 표준, 규제 체계, 시스템 연계 협력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되므로 은행, 핀테크 등 **민간 지급서비스 업계**에도 상당한 **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**

⇒ 초기 현황 조사 및 논의 단계부터 **적절한 준비와 대응**이 필요

IV. 국제기구 개선방안*의 주요 내용

* BIS 지급결제위원회(CPMI)를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(10개)을 중심으로 소개. FSB 중심으로 각국의 감독기구가 주도하여 추진할 사업 내용은 본문 <별첨 3> 참조

[기존 지급결제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]

1.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 연계 추진

- (개요) 각국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기존 환거래은행의 개입을 축소하고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단축을 도모하는 중장기 프로젝트
 - 최근 스웨덴,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국간, 역내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, 싱가포르와 인도간에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직접 연계를 추진
 - 시스템 연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의 은행과 핀테크 등 지급기관간의 연계가 가능해져 지급서비스 범위가 확장되고 처리 효율성도 제고
- (대응) 역내에서의 사업 추진 경제성, 금융협력 차원의 필요성,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주요국 등과 함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

2. ISO 20022의 글로벌 도입안 마련

- (개요)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통신 전문 표준인 ISO 20022의 각 회원국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마련
- (대응) 한은금융망의 경우 참가 기관과의 공동 도입 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2020.10월 새롭게 출범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금년부터 ISO 20022 도입 방안을 검토

3.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

- (개요) 각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보하여 시차로 인한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
 - 최근 기축통화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RTGS 방식*의 소액 신속이체시스템 구축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 방안의 구체화 가능성이 증대
- * 금융소비자 간 자금 이체와 은행 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

- **(대응)** 지급결제인프라 운영시간은 각국의 금융환경과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연장 시 **경제적 자원 확보 및 전체 참가기관의 합의**가 필요*한 만큼 우리의 금융환경, 참가 기관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

* 現 로드맵은 각국의 참여 의향(입장) 발표(2023.1분기)까지만 추진계획에 포함

4. 중앙은행간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(Reciprocal Liquidity Bridge)

- **(개요)** 중앙은행이 서로 유동성 협약을 맺은 **상대국의 통화자산을 담보**로 자국에서 영업 중인 **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국의 통화 유동성을 대출**해주는 제도
 - 서로 간에 교역 및 금융거래가 활발하고 환율이 안정된 **인접 경제권역의 국가간** 주로 실시
 - 해외에 진출한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조달비용이 낮은 통화를 선택·보유할 수 있어 **복수통화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에 기여**
- **(대응)** 아세안+3 역내 지역은 국가별 통화가 모두 상이하고 외환시장 성숙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나 역내 주요국간 협력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제도의 효익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 충실히 검토를 수행할 계획

5. 외환동시결제(PvP) 활성화 추진

- **(개요)** 국가간 지급시 수반되는 **외환거래의 동시결제 비중**을 높여 **외환결제 리스크***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
 - * 매도통화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매입통화는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으로 수취하지 못할 위험
- **(대응)** 우리나라의 외환동시결제비중은 69%로 세계평균(40.9%)을 상회하고 있지만 향후 非 동시결제거래에 대한 국제기구의 **통계정보 수집이 강화**되고 CLS를 보완할 **신규 외환결제시스템 구축안 등이 논의**될 가능성에 대비

6.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

- **(개요)** **금융정보 개방성을** 표방하는 **API(오픈뱅킹) 플랫폼의** 국가간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을 확보하기 위한 **글로벌 표준 프로토콜*** 수립 방안을 논의
 - * 오픈 API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규약(REST, SOAP 등)
 - API 프로토콜 표준화로 **API의 국가간 상호운용성 및 접근성**이 확대될 경우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지급서비스가 증가하고 지급 효율성이 개선될 여지 (예:글로벌 API를 통해 他국 글로벌 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직접 이용 등)

- (대응) 초기 API 표준 선정 방향에 따라 각국의 오픈뱅킹에 파장이 클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신 표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

7.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자격 확대 검토

- (개요) 전통적으로 은행에 허용되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격을 핀테크를 포함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확대하는 방안

- 중앙은행 결제시스템 등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의 서비스 범위를 다양한 지급기관으로 확대하여 국가간 지급의 결제리스크를 낮추고 시장경쟁을 제고

⇒ 논의 방향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지급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기회가 창출되거나 각 회원국의 결제리스크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- (대응) 비은행의 지급결제망 참가 이슈는 혁신 및 경쟁 촉진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리스크 요인이 상존

- 한국은행은 최근 개방성 확대 및 안전성 강화라는 균형적 시각에서 소액 결제시스템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

- 향후 지급시장에서 핀테크 참가 여건이 성숙해질 경우 한은도 결제망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

[혁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검토]

8.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

- (개요)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·저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 주도하는 복수통화 통합 지급결제시스템* 구축 방안을 검토

* 자국 통화 외에 외국통화 지급거래 결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전(FX) 등이 필요한 국외 지급거래과정을 단순화

- 최근 BIS, 아랍통화기금(AMF)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북유럽 4개국 등에서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가능성을 검토

국가간 협력을 통한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추진 사례

| | |
|-------------|--|
| 북유럽 4개국 P27 |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 통화별 신속자금이체망의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(진행중) |
| 아랍통화기금 BUNA | 미 달러화 등 기축통화와 사우디 리알화 등 아랍 주요국 통화간 통합 지급결제인프라 구축 |

- (대응) 아랍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한국 원화의 참여를 추진
 - 달러화 등의 기존 송금 경로 외에 원화 등 기타통화를 이용한 대체 국외 송금경로를 확보함으로써 국외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원화의 국외활용도 제고도 기대

9.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*

* 향후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를 가정한 미래지향적(forward-looking) 개선방안으로 동 안과 별개로 BIS CPMI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음을 명시

- (개요)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간 감시·감독체계의 조화 방안 등을 논의
 -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지배구조(governance) 요건 정립, 자금세탁(AML)·테러자금조달(CFT) 방지를 위한 글로벌 법적·운영리스크 관리방안 마련, 국가간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
- (논의 방향)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조 감시·감독, 국제기준 정비 방안 등을 논의

10. CBDC 설계 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

- (개요)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(CBDC) 발행 연구가 추진되면서 BIS에서도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 측면을 고려한 CBDC 연구를 장기 과제로 채택
- (대응 방향) 한국은행은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, 법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2021년중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
 -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

V. 향후 조치 및 계획

- (업무추진 그룹 참여) 한국은행은 국제기구가 국가간 지급서비스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발족한 6개의 업무추진 그룹(workstream)*에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공유할 예정

* ① 지급결제 연계, ② 외환동시결제, ③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, ④유동성 공급, ⑤ 통신메시지 및 API 표준화, ⑥ 지급결제의 미래

I 논의 배경

국가간 지급서비스: 해외 송금(remittance), 교역 대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 혹은 기업 등의 지급인(payer)이 타국의 수취인(payee)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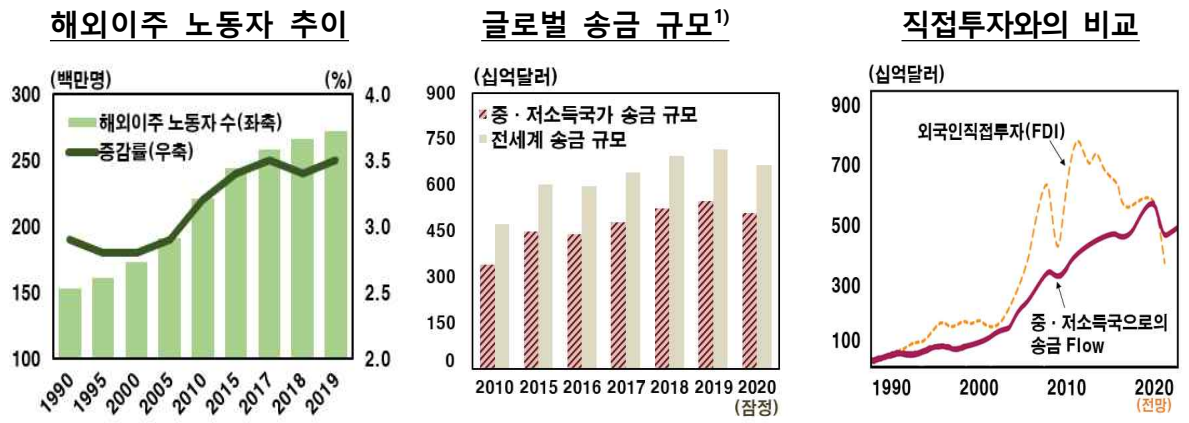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글로벌 교역 확대, 해외이주 노동자수가 급증*하면서 **BIS 등 국제기구**에서 **‘국가간 지급서비스 효율성 개선방안 마련’** 이슈가 크게 부각

* 전세계 해외이주 노동자 수는 2000년 1.9억명(세계인구 2.9%)에서 2019년 **약 2.7억명** (3.5%)으로 42% 증가 (World Economic Forum, 2020.1월)

○ 전세계 **국외 송금 규모**는 2019년 7,170억달러로 **2010년(4,730억달러)** 대비 **52%** 성장하였고 중·저소득 국가로의 송금규모(5,477억 달러)는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규모(3,440억달러)를 추월

○ 이러한 송금 규모 확대에도 국외 송금 평균 비용은 **송금금액의 7% 수준** (국내 송금비용의 10배)이고 **소요 기간도 최장 7일**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*

* UN은 해외 송금이 약 8억명에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생명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 (Antonio Guterres 사무총장, 2019)



주 : 1) World Bank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저소득국으로의 송금 규모가 약 20% 감소할 것으로 전망
 자료 : World Bank, UN, IMF 추산

⇒ 환(FX)거래은행의 개입과 국가별 상이한 규제 등으로 고착된 **고비용 송금 방식을 저비용 방식으로 바꿈**으로써 **국제화를 지원하고 금융포용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 논의가 증가**

□ 2020년 2월 **G20 중앙은행 총재·재무장관 회의**는 “**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**”을 최우선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기구에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

- 이에 BIS, FSB 등 국제기구 TF는 3단계에 걸쳐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문제점 (2020.4월), **개선방안**(7월) 및 **종합 추진 로드맵(10월)**을 발표하였으며 금년부터 중장기 시계(2~5년)에서 본격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



* BIS CPMI(지급결제위원회) : 한은(금융결제국)이 정회원으로 참여
 FSB : 금융위와 한은이 정회원으로 참여

II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(G20 1단계 보고서)

- 국제기구 TF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**4대 문제점**으로 국내 지급서비스에 비해 ① **비싼 수수료**, ② **느린 처리속도**, ③ **접근성의 제약**, ④ **낮은 투명성**을 지적

○ 이는 국내 송금 시에 비해 다수의 중개기관이 개입하여 각종 규제 준수 의무, 환전 등 **처리 프로세스가 복잡하고** 시장 진입장벽 등의 요인으로 **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**

- ① **(처리 프로세스의 복잡성)** 복수의 환거래은행* 개입, 통화 환전(FX) 등으로 국내 지급 시에 비해 **송금 프로세스가 복잡**

* 국제 환거래은행은 전체 국가간 지급서비스 중개 기관의 약 과반 이상을 차지(BIS, 2020) 환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기존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문제점은 <참고 1> 참조

⇒ 비용 ↑, 속도 ↓

- ② **(규제 컴플라이언스 업무증대)** 국가별로 외환 규정, 자금세탁/테러자금 방지(AML/CFT) 협약 등의 적용이 상이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의 규제 준수 부담이 증대

⇒ 비용 ↑, 속도 ↓, 서비스 접근성 ↓

- ③ **(자본조달비용)** 통화환전(FX) 시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결제자금 사전 적립 및 규제 준수 의무, 자금 수신 시점의 불확실성 등으로 **자본조달 비용이 증가**

⇒ 비용 ↑, 서비스 접근성 ↓

④ (진입장벽에 따른 경쟁 약화) 정보 채널의 비대칭, 복잡한 비용 산정 구조 등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견고해지며 글로벌 환거래은행의 집중화 현상도 강화

⇒ 서비스 접근성 ↓, 투명성 ↓

⑤ (통신양식 非표준화) 중개기관간 데이터 정보 송수신을 위한 표준이 상이하여 자금이체의 일관(straight-through) 처리가 어렵고 및 중개기관간 거래정보의 상호 대사 과정도 복잡

⇒ 비용 ↑, 속도 ↓, 투명성 ↓

⑥ (한정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)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청산과 최종 결제를 책임지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이 일중 업무시간으로 한정되어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의 연속성이 단절

⇒ 속도 ↓, 비용 ↑

⑦ (지급시스템 노후화) IT 혁신속도가 가팔라지고 인프라 구축 비용도 증대되면서 국가간 지급인프라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처리 효율성이 저하

⇒ 속도 ↓, 비용 ↑, 서비스 접근성 ↓

국가간 지급서비스의 4대 문제점과 7대 주요 마찰 원인



<참고 1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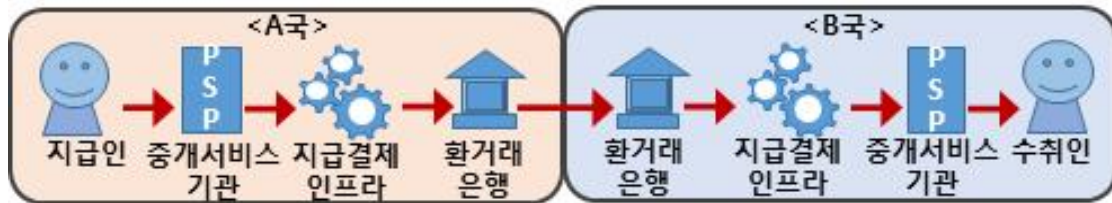
환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기존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문제점

- 국가간 지급결제는 그동안 기업간 거래자금의 국외 이체를 위해 설립된 **전통적 환거래은행 모델**(Correspondent Banking)에 **의존**해 왔으나, 국외 이체 빈도수가 높은 소액자금 이체에도 동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며 **다양한 비효율이 발생***

*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<별첨 1>, <별첨 2> 참조

- **(환거래은행을 통한 지급방식)** 지급인이 은행, 전문 송금업체 등 중개기관을 통해 환거래은행에 자금 이체를 지시하면 송금인의 환거래은행이 해당 통화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취인의 환거래은행에 자금을 이체

환거래은행 모델¹⁾의 구조



주 : 1) 환거래은행에는 마치 중앙은행처럼 여러 은행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

- **(특징)** 자금이 지급인에서 수취인에 도달하기까지 **여러 중개기관(최대 4개)의 확인 과정**을 거침
- **(환거래은행 모델의 장단점)** 환거래은행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으로 국외 송금 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체 속도가 느리고,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수반
 -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금세탁방지(AML; anti-money laundering) 및 테러자금조달금지(CFT;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) 규제 준수를 위해 고객 신원확인(KYC; know your customer) 업무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
- **(환거래은행의 축소)**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글로벌 환거래은행 네트워크는 **지난 7년간 20%나 축소**되고 네트워크내 **중개기관 수도 10% 감소***

* 이로 인해 호주에서 남태평양 국가로의 송금비용은 송금액의 12% 수준까지 증가(IMF). 자세한 내용은 <별첨 3> "7. 안전한 지급경로(corridor)의 발굴과 장려" 참조

- 이로써 기존의 **환거래은행 독과점이 심화**되며 시장경쟁을 통해 창출되는 '혁신' 동력이 약화
- 환거래은행 서비스가 중단된 지역에서는 공인되지 않은 네트워크나 암호 자산 등 **규제 회피용 음성거래(shadow payments)가 확대**됨으로써 자금이동 투명성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속출

III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과 추진로드맵 (G20 2·3단계 보고서)

- 국제기구 TF는 2020년 7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**5대 중점 추진 분야**를 선정하고 총 **19개의 개선방안**을 마련 (G20 2단계 개선방안 보고서)
- 2020년 10월에는 동 **19개 개선방안의** 구체적 **실행조치(actions)**, **추진 시기(timeline)** 및 **달성 목표(desired outcome)**를 담은 **종합 추진 로드맵**을 G20 **총재·장관회의 앞 보고** (G20 3단계 추진 로드맵)

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 추진계획

| 5대 중점추진 분야 | 구체적인 개선방안 | 실행 시기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'20 | '21 | '22 | '23 | '24 | '25 |
| A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 |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 | | | | | | |
| | 지급결제 국제기준 정비 및 강화 | | | | | | |
| | 지급서비스 수준 표준화 추진 | | | | | | |
| B 국가간 지급서비스 규제감독 및 감시 체계의 조화 | 규제체계 일관성, 상호연계성 강화 | | | | | | |
| | 자금세탁방지(AML)·테러자금조달금지(CFT) 적용방식의 일관성 제고 | | | | | | |
| | 지급거래 정보의 국가간 공유 활성화 | | | | | | |
| | 안전한 지급경로(corridor) 발굴 및 장려 | | | | | | |
| C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의 개선 | 고객확인정보(KYC) 국가간 공유체계 마련 | | | | | | |
| | 외환동시결제(PvP) 활성화 | | | | | | |
| |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격 확대 | | | | | | |
| |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| | | | | | |
| |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| | | | | | |
| D 지급결제 정보의 표준화 추진 |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 연계 추진 | | | | | | |
| | ISO20022 표준 도입 실행안 마련 | | | | | | |
| |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 | | | | | | |
| E 혁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 모색 | 거래 상대방 고유 식별기호 도입 | | | | | | |
| |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검토 | | | | | | |
| |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| | | | | | |
| | CBDC 설계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 | | | | | | |

- (추진 로드맵 성격) BIS, FSB, 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작성 및 실행에 참여하고 G20 회원국의 총재·장관이 승인하는 **공동 업무추진 협약**
 - G20 회의의 **공동 실행 합의안(coordinated action plan)**이고 국제기구가 단계별 조치의 이행상황을 **직접 점검하는** 만큼 각 **회원국에 협조 의무가 부여**
 - 다만 **국가간 지급결제환경 특수성**을 고려한 회원국 재량(flexibility)은 인정할 방침
 - (추진 주체) BIS, FSB, IMF 등 각 **국제기구**가 각자의 책무에 부합하는 개별 **개선방안**의 **'실행과 점검'**을 직접 관리(coordination body)
 - 단계별 **실행조치(action plan)** 마련, 회원국과의 **조율, 이행수준 모니터링** 등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
 - (추진 범위) 공공과 민간영역에 걸쳐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구축, 규제 체계 정비 및 조율, 국가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포함
 - (추진 시기) 19개 방안(프로젝트)별로 기술적 난이도, 필요 자원, 국가별 공조 수준, 국가간 지급결제인프라 격차 등을 고려하여 **2021년~2025년의 목표 달성 시한**을 설정
 - (추진상황 점검) FSB의 **TF (CPC: Cross-border Payments Coordination group)**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의 **진척 상황**이 **2021.10월부터 G20 회의에 매년 보고될** 예정
 - (회원국에의 영향) 금년부터 19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글로벌 현황 조사가 마무리되고 프로젝트별 단계적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년부터는 G20 및 BIS 모든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
 -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**중앙은행과 감독기구**뿐만 아니라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수행하는 **금융기관과 비은행지급업체** 등에도 **영향**
- ⇒ 우리나라 지급서비스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되는 만큼 파급력 큰 사안을 중심으로 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**적극적 준비와 대응**이 필요

IV 국제기구 개선방안*의 세부내용 및 일정

* BIS 지급결제위원회(CPMI)를 중심으로 26개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추진할 사업을 소개. FSB 중심으로 각국의 감독기구가 주도하여 추진할 사업은 <별첨 3> 참조

[기존 지급결제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]

1.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 연계 추진

- (개요) 각국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**기존의 환거래은행망의 개입을 축소하고**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단축을 도모하는 글로벌 중장기 프로젝트
- (기대효과)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의 로컬 은행 및 핀테크 등 지급기관 간의 서비스 연동이 가능
 - 중개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지급서비스 **효율성 및 속도 개선에 기여**
- (글로벌 사례) 주로 상호 교역량 및 송금규모가 큰 **단일 경제권역 내의 인접국**끼리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추진 사례가 다수 (투자 대비 경제성)
 - (이종통화 국가간 결제시스템 연계) 미 연준의 소액지급시스템(ACH)과 멕시코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(RTGS)를 직접 연계하여 멕시코중앙은행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달러화 송금 및 페소화 환전 프로세스를 직접 수행

이종통화간 결제시스템 연계 사례



- (단일통화 국가간 결제시스템 연계) 「스위스 유로화 RTGS」와 「ECB의 RTGS」 연계사례와 같이 양 시스템에 동시에 참여하는 단일 접속 중개기관*을 통해서도 시스템 연계가 가능

* 「스위스 유로화 RTGS」 및 「ECB RTGS(Target2)」 양 시스템에 동시에 직접 참여하는 **Swiss Euro Clearing Bank**를 통해 유로화 송금서비스를 수행

단일접속 기관을 통한 RTGS 연계 사례



- (소액 신속자금이체시스템<fast payment system>* 연계) 각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연계하여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로컬 금융기관이 他국 금융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국가간 신속이체 서비스를 제공

* 고객 계좌간 자금을 실시간 이체(24시간 연중무휴)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공동망(2001년 구축)에 해당

- 소속 국적, 송금통화에 상관없이 개인간 자금이체, 환전, 포지션 정산 등의 처리를 일원화할 수 있어 지급 프로세스 효율이 월등히 개선

- ① (북유럽 사례) 북유럽 4개국(스웨덴, 노르웨이, 덴마크 및 핀란드) 은행연합이 4개국 통화별로 운영중인 소액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프로젝트(P27)를 추진중

- 4개국 국민간 통화 종류와 관계없이 실시간 송금 지원 (2021년 하반기 개시)

- ② (아시아 사례) 싱가포르통화청-인도 재무부, 싱가포르통화청-태국중앙은행은 '금융혁신을 위한 국가적 협력 MOU'를 체결하고 양자간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연계 추진계획*을 발표

* "Foundational Digital Infrastructure": 개념검증(Proof-of-concept) 프로젝트로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

국가간 소액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직접 연계



- **오픈 API**에 기반하여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지급업체도 지급시스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체 환전 기능 탑재도 검토
- 최종 결제수행을 위해 참여국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

□ **(대응 방향)** 관련 시범 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**ASEAN+3 등 역내 협력무대**에서도 관련 사업의 타당성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

- 사업 참여국간 **금융협력 증진 효과**를 포함한 사업 추진의 **경제성**, 인프라 연계시 **시스템리스크 전이 위험**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수행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|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현황 조사 실시 ○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사례 조사 (CPMI) | 2020.11-2021.5월 |
| (조치2)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(framework) 마련 ○ 연계 목표(end-state), 연계 방법, 법적·기술적·정책적·운영상 고려사항 등 (CPMI) | 2021.6-2022.7월 |
| (조치3)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조치 ○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를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(관련 기관) | 2022.8월- |

2. ISO 20022의 글로벌 도입안 마련

□ **(개요)** 지급결제시스템간 통신 전문 표준으로 **ISO 20022 도입을 촉진**하고 각 회원국의 ISO 20022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**국제 가이드라인** 마련을 추진

- BIS CPMI는 ISO 표준위원회, 각국 중앙은행 등과 **글로벌 송금 데이터 양식의 개선**도 함께 추진할 예정

□ **(기대효과)** 국가간 금융거래 시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 감축

□ **(대응방향)** **G20 회원국들의 시스템 환경과 고유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국의 ISO 20022 도입안 마련**(3단계)을 로드맵 계획에 포함하되 도입 완료 시한 등은 명시하지 않을 전망

- **한은금융망**의 경우 **참가 기관과의 공동 도입 추진**이 필요한 사안으로 2020.10월 새롭게 출범한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금년부터 ISO 20022 도입 방안을 검토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-|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ISO 20022 도입 및 API 활용 확대를 위한 Tech Sprint 개최¹⁾ ○ ISO 20022 도입 및 API 활용 확대를 위한 IT업계 등과의 혁신기술 경진대회(Tech Sprint) 개최 (BIS Innovation Hub) ²⁾ | 2020.11-2021.6월 |
| (조치2) 국가간 송금 관련 데이터 양식 표준화 및 개선 추진 ○ (BIS CPMI, ISO 표준위원회, 각 국 중앙은행 공동) | 2020.12-2022.6월 |
| (조치3) 각 국의 ISO 20022 도입계획 제출 ○ BIS CPMI 및 G20 회원국의 ISO 20022 도입계획 제출 (각국 중앙은행, BIS CPMI) | 2021.6-2022.6월 |
| (조치4) ISO 20022 도입 지원을 위한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○ 각 회원국의 ISO 20022 표준 도입, 데이터 양식 전환 (conversion/mapping)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(BIS CPMI) | 2022.1-2022.12월 |

주: 1) '15 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프로토콜 도입'과 공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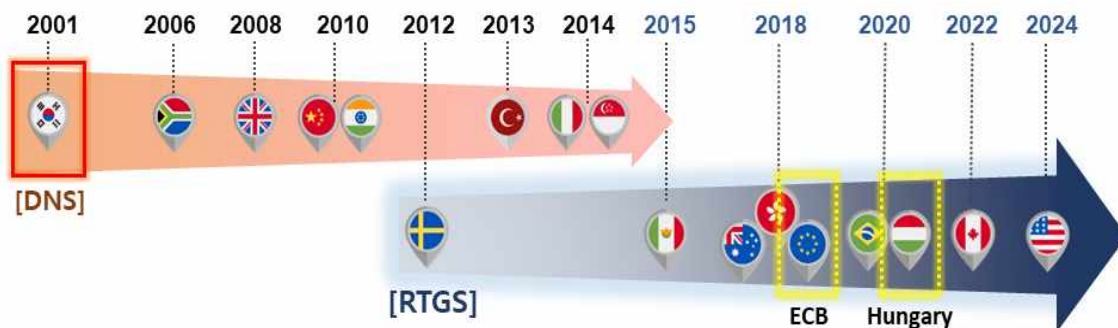
2) 2019.9월 BIS가 회원국간의 금융혁신 관련 협력 제고를 위해 설립한 산하기관으로, 현재 싱가포르, 홍콩, 스위스 바젤에 운영 중

3.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

□ (개요) 각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대하여 시차로 인한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의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 논의

- (배경) 최근 **기축통화국**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**24시간 RTGS 방식의 소액 신속이체시스템** 구축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 방안의 구체화 가능성이 증대

결제방식¹⁾에 따른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현황



주 : 1) DNS(Deferred Net Settlement): 이연차액결제 방식
 RTGS(Real-Time Gross Settlement): 실시간총액결제 방식

○ (기대효과) 각국의 주요 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중첩 시간대가 확대될 경우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되고 비용 감축도 가능

—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외환동시결제(PvP) 활성화 추진 사업에도 시너지 창출이 가능

□ (대응방향) 결제시스템의 24시간 RTGS 운영방식을 채택한 회원국이 여전히 소수인 점, 결제운영시간 설정은 **각국 통화의 국제화 수준 등 금융환경 특수성**이 반영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권고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

⇒ 現 로드맵도 **각 회원국의 참여 의향(입장) 발표**까지만 추진계획에 포함

○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은 新 인프라 구축, 인력 충원 등 **경제적 비용** 부담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**인프라에 참여하는 전체 금융 기관과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***되는 등 복잡한 검토 절차를 수반

* 한은금융망의 경우 당행뿐만 아니라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도 결제시간 연장에 따른 IT 추가 설비 및 인력 충원 부담이 높아짐

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비교



⇒ 각국의 결제운영시간 연장 의향 및 추진계획을 공표하는 시기(2023.3월)까지 우리의 고유 지급결제 정책 환경, 결제시스템 참여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동 개선안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**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-|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현황 조사 ○ 각 국가별 운영시간 및 연장 추진 상황 조사 (CPMI) | 2020.11-2021.1월 |
| (조치2) 관련 리스크 등 정책적 고려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○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향후 목표 운영시간(end-state), 관련 리스크 등 정책적 고려사항 조사, 리스크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(CPMI) | 2021.2-9월 |
| (조치3) 운영시간 연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문제점(challenges) 대응 방안 마련 ○ 시스템 연장 가이드라인 및 문제점 대응방안 마련 (CPMI) | 2021.10-2022.3월 |
| ○ 시스템 연장 결정시 세부 추진방안 마련 (각 중앙은행, 시스템 운영자) | 2022.4-2023.3월 |

4. 중앙은행간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

- (개요) 중앙은행이 서로 협약을 맺은 **상대국의 통화자산을 담보로 자국 소재 외국** 금융기관에게 **자국 통화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** 제도(reciprocal liquidity bridge)로 국외담보수용제도*의 한 형태

* 중앙은행이 해외통화 또는 해외통화표시 증권을 적격 담보로 수용하여 자국 내에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<참고 2>를 참조

- (기대효과) 해외에 진출한 글로벌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조달비용이 낮은 통화를 선택·보유할 수 있어 **복수통화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에 기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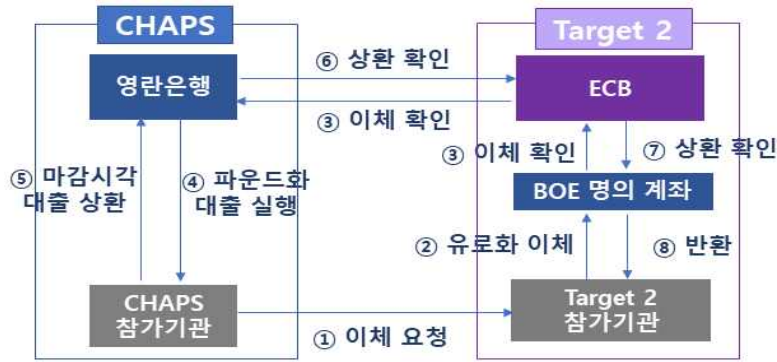
⇒ 국가간 지급서비스 **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경쟁을 촉진**

- (운영사례) 상호 교역 및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어 환율이 안정된 인접 경제 권역의 국가간 주로 실시

- (예시) 영란은행 결제시스템(CHAPS)에 참여하는 프랑스계 은행이 유로지역에 보유한 유로화 유동성을 ECB 거액결제시스템(Target2)내 영란은행 계좌에 담보로 납입하고 영란은행으로부터 파운드화를 공급받는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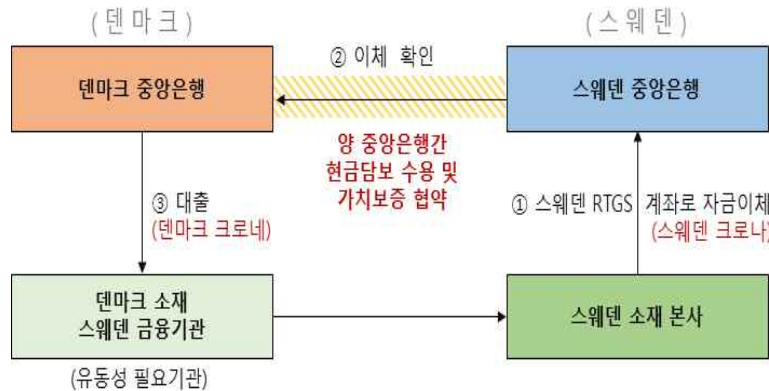
— ECB는 결제시스템(Target2) 내에 개설한 영란은행 **명의를 특별 당좌** 계좌에 **유로화를 예치**하고 동 사실을 영란은행에 즉시 통보 (**ECB-영란은행 유동성 브릿지**)

영란은행과 ECB간 유동성 브릿지 (예시)



- (사례 2) 북유럽 3국(덴마크, 스웨덴, 노르웨이) 중앙은행이 각국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 참가 기관(주로 은행)에 상대국의 현금을 담보로 수령하고 자국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2003년부터 운영중(Scandinavian Cash Pool)

스칸디나비안 현금 풀(pool) 제도



- (대응방향) 우리나라가 속한 아세안+3 지역의 경우 국가별 통화가 모두 상이하고 외환시장의 성숙도가 북미 및 유럽 지역에 비해 뒤쳐지는 만큼 제도 도입의 효익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 **세밀한 검토가 필요**

⇒ 그러나 이번 BIS 개선방안을 계기로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 역내 주요국간 협력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토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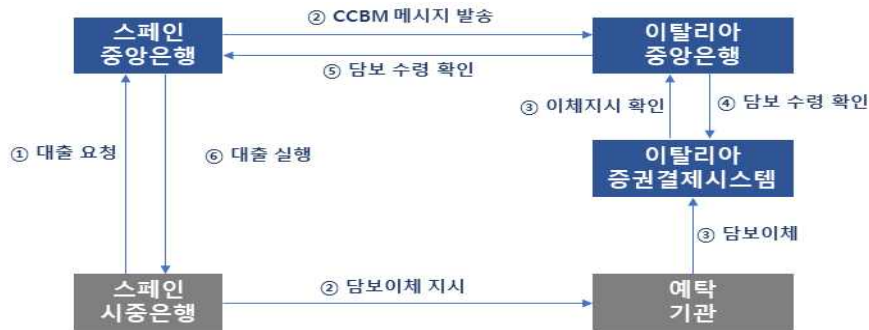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-|-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제도운영 사례 파악 ○ 제도를 운영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 사례 분석 (CPMI) | 2020.11-2021.11월 |
| (조치2) 제도 도입의 효익 및 리스크 분석,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체계(Framework) 마련 ○ 각국 운영사례를 통한 제도 도입시의 장점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동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 (CPMI 등 관련기관) | 2021.7-2022.7월 |
| (조치3) 기술지원 제공 ○ 제도 도입 국가에 국제기구 차원의 기술 지원 | 2021.8- |

<참고 2>

국외담보수용제도

- **(개요)** 중앙은행이 해외통화 또는 해외통화표시 증권을 적격 담보로 수용하여 자국 내에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제도(Cross-Border Collateral Arrangement, 이하 'CBCA')
- **(기대효과)** 역내 채권시장 참가 기관의 유동성 조달 수단이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안 시 중앙은행간 협약을 통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가능
- **(운영현황)** 환리스크가 없고 회원국간 증권결제시스템이 연계되어 국외 담보 증권의 확인과 검증이 수월한 **유로지역을 중심으로 제도가 활성화**
 -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은행간 혹은 상대국 증권예탁원과 **상대국 증권의 신속한 수령과 보관, 실시간 회계처리를 담보**하기 위한 **시스템 연계**가 필요

유로지역의 대표적 증권담보 수용 구조



- **(역내 제도운영 현황)** 아세안+3 역내에서는 **일본과 싱가포르**가 CBCA를 주도
 - 싱가포르는 총 8개국(말레이시아, 영국, 태국, 프랑스, 네덜란드, 독일, 미국, 일본)과 CBCA를 체결하고 상대국의 국공채를 담보로 수용
 - 일본은행은 역내 4개국(태국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필리핀)과 CBCA를 체결
 - 아세안 중앙은행은 일본 정부채를 적격담보로 수용하는 반면, 일본은행은 아세안국의 정부채 등을 적격담보로 수용하지 않음
 - 아세안 중앙은행이 자국에 진출한 일본 금융기업 등에 일본 엔화표시 정부채를 담보로 현지 통화 유동성을 제공
 - 아세안 상대국은 **일본 금융기관의 자국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시장 발전혜택**, 안정적인 일본 국공채의 유입 등을 통해 자국 국공채가 일본에서 담보로 수용되지 않는 불리함을 상쇄
- **(평가)** 해외 자산의 적격 담보 수용에 따른 정책 리스크를 오롯이 해당국의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형태로 통화스왑 등 여타 협력방안 대비 정책 효과, 리스크 수준 등에 참여국 간의 합의가 중요

5. 외환동시결제(PvP) 활성화 추진

외환결제리스크: 국가간 결제시간대 차이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매도통화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 등으로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리스크

외환동시결제(Payment versus Payment) : 외환결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외환 거래에 따른 매도통화와 매입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

- (개요) 국가간 지급에 수반되는 **외환거래의 외환동시결제 비중**을 높여 **외환결제리스크***의 **감축을 추진**하기 위한 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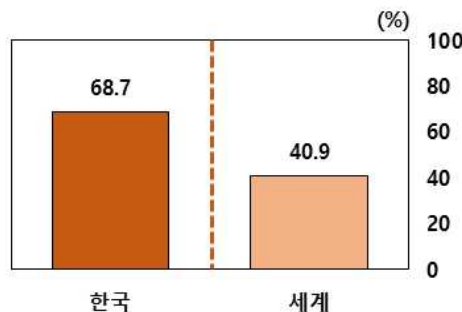
* 매도통화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매입통화는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으로 수취하지 못할 위험

- (배경) 그간 **대표적인 외환동시결제 글로벌 시스템인 CLS 시스템***(외환동시결제)은 결제지원 통화가 18개로 여전히 다수 신흥국의 통화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외환동시결제의 성장이 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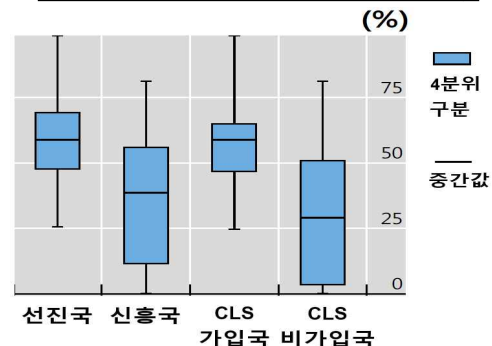
*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BIS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전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이 외환동시결제를 위해 설립한 CLS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**우리나라 원화는 2004년 결제통화로 지정**

- (기대효과) 외환결제리스크 축소로 송금비용 절감과 처리속도 증가를 기대
- (대응방향) 우리나라의 외환 동시결제비중은 69%로 세계평균(40.9%)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
 - 향후 非동시결제 외환거래에 대한 **통계 편제 등 정보 수집이 강화**되고 CLS 이외의 **신규 외환동시결제 시스템 구축 논의** 등이 전개될 가능성

외환동시결제비중¹⁾(일평균)



은행의 외환동시결제 이용 비중²⁾



주 : 1) 2019.4월 기준
 2) BOX의 상단선과 하단선은 각각 1분위와 3분위 값
 자료 : BIS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<p>(조치1) 現 FX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 촉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BCBS의 2013년 「외환결제리스크 감독지침」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(joint letter) 발표 (CPMI, BCBS)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참가자의 글로벌 외환시장 규범(FX code) 준수 촉구 (CPMI, BCBS) | 2020.12월- (이후 지속) |
| <p>(조치2) FX 결제현황 조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글로벌 외환결제 현황 조사 (CPMI)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LS 등 기존 외환동시결제시스템 활용 확대 방안, 신규 외환 동시결제 수단 개발 등 외환동시결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검토 (CPMI, 민간기관) | 2020.11- 2021.5월 |
| <p>(조치3) 외환동시결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시행계획 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PvP도입 확대를 위한 글로벌, 국가별 공청회 개최 후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 결정 (CPMI)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(관련 당국) | 2022.5-11월 |
| | 2022.12- 2023.12월 |

6.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

- (개요) 금융정보 개방성을 표방하는 API(오픈뱅킹) 플랫폼의 국가간 상호 운용성(interoperability)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* 수립방안을 논의

* 오픈 API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규약(REST, SOAP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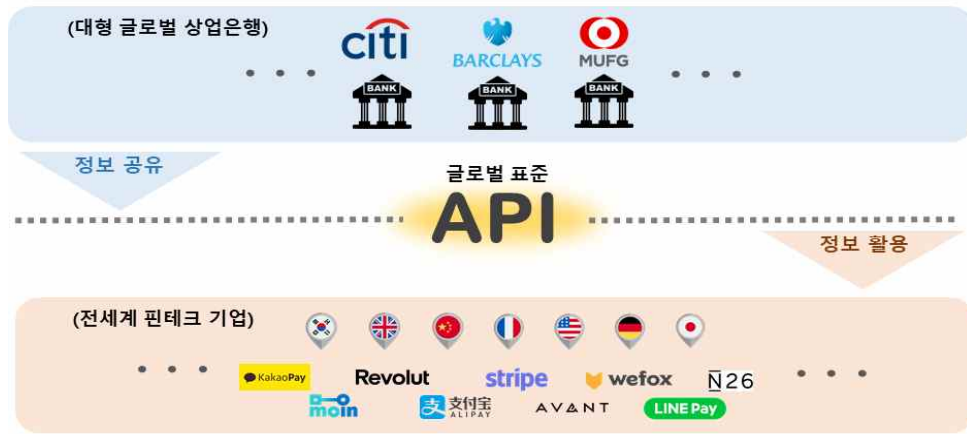
- (배경) 대다수 주요국이 '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'을 위해 오픈뱅킹 정책을 자국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

-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API를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여건을 조성하는 공감대가 마련

- (기대효과) 국가별·권역별로 상이하게 발전한 오픈 API 프로토콜을 표준화하여 오픈 API의 국가간 상호운용성 및 접근성이 확장될 경우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지급서비스가 증가하고 지급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*

* 글로벌 공동 API를 통해 他 국가 글로벌 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접속이 가능해져 은행 및 비은행의 국외 송금 서비스상품이 더욱 다양화되고 증대될 가능성

글로벌 공동 API 프로토콜 구축



□ (대응방향) 초기 API 표준 선정 방향에 따라 각국의 오픈뱅킹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업계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표준 선정 등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

○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집중적 금융정보 중계센터인 '오픈뱅킹 공동망*'을 가동중이어서 표준화 논의 대응에 일부 수월한 측면**도 있음

* 2019.12월 출범하여 2021.1월 기준 총 94개 기관(핀테크 기업 57개)이 참여하여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제공중

** 현재 오픈뱅킹 공동망의 API 규격은 Rest방식(프로토콜은 HTTP, 포맷은 JSON)으로 공동망 프로토콜 변경시 전체 참가 금융회사 접속 프로토콜 변경 효과가 발생

○ 글로벌 표준 논의에 대한 국내 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신규 글로벌 표준 논의가 국내 시장 및 규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를 추진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|-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ISO 2022 및 API 활용을 위한 Tech Sprint 개최¹⁾ ○ ISO 2022 및 API를 활용한 혁신기술 경진대회(Tech Sprint) 개최 (BIS Innovation Hub) | 2020.11-2021.6월 |
| (조치2) 각 국의 오픈뱅킹 프로토콜 이용 현황 조사 ○ 現 API 프로토콜 현황 조사 (CPMI, 관련 기관 협동) | 2020.11-2021.10월 |
| (조치3) 민간에 글로벌 API 프로토콜 표준 공동 개발 촉구 ○ 민간업계에 공동 프로토콜 개발 촉구 (CPMI 등) | 2021.11-2022.6월 |
| (조치 4) 新 API 표준 도입에 대한 개념검증(PoC) 등 실시 ○ 민간업계와 신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검증(PoC) 또는 시범사업 실시(Pilot) (BIS Innovation Hub) | 2022.4-2023.6월 |

주: 1) '14 ISO 2022 표준 도입'과 공동 추진

7.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자격 확대 검토

□ (개요) 전통적으로 은행에 허용되던 **중요 지급결제시스템**의 **참가자격**을 핀테크를 포함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**확대하는 방안 논의**

○ (배경) 영국, 싱가포르 등에서 **핀테크 지급서비스가 환거래은행의 국가간 지급시장 독과점을 완화할 신규 대체제**로 부상하며 관심이 증가

— (영국) **2017.7월** 영란은행은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핀테크 지급업체와 기존 은행간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등 **비은행 지급서비스제공기관**에 중앙은행 내 **결제계좌 개설을 허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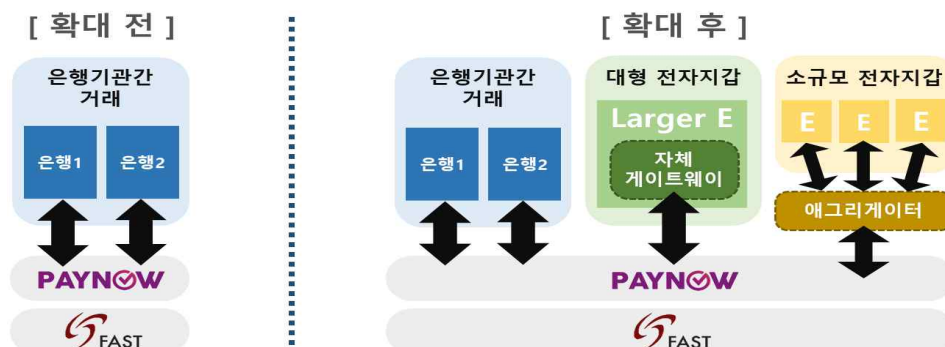
· 핀테크 기업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중앙은행 등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수행한 지급서비스의 결제 주체로 참여

— (싱가포르) 싱가포르통화청은 은행에 한정되어 있던 **신속자금이체시스템(FAST)** **참가 권한**을 금년 2월부터 **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**으로 **확대**

· 대형 전자지갑 운영자는 자체 게이트웨이*를 통해 직접 참가하며 소규모의 전자지갑 운영자는 IT회사(애그리게이터)가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참가 가능

* 참가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중앙 인프라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

싱가포르통화청의 FAST 참가자격 확대



○ (기대효과) 보다 다양한 지급서비스 수행기관에 중앙은행 결제시스템,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주요 지급결제인프라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국가간 지급의 결제리스크를 낮추고 **진입장벽**을 낮추어 **시장경쟁을 제고**

○ (과급력) 핀테크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회원국의 핀테크 발전 상황, 결제참가제도 상황에 따라 **전체 효익과 리스크가 달라지므로** 모든 회원국에 제도 변경을 강제하지는 않을 전망

⇒ 동 방안의 논의 방향에 따라 글로벌 비은행 지급기관을 중심으로 **신규 사업기회가 창출**되거나 각 **회원국의 결제리스크 관리**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□ (대응방향) 비은행의 지급결제망 참가 이슈는 혁신 및 경쟁 촉진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리스크 요인이 상존

○ 한국은행은 최근 **개방성 확대*** 및 **안전성 강화**라는 균형적 시각에서 소액 결제시스템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

* 한은금융망은 타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에 비해 **참가기관 범위를** 보험사, 증권사 등 비은행으로 **지속 확대**하는 등 **개방성을 유지**해 왔음 (2020.6월 기준 123개 기관 참여)

○ 향후 지급시장에서 핀테크 참가 여건이 성숙해질 경우 한은도 결제망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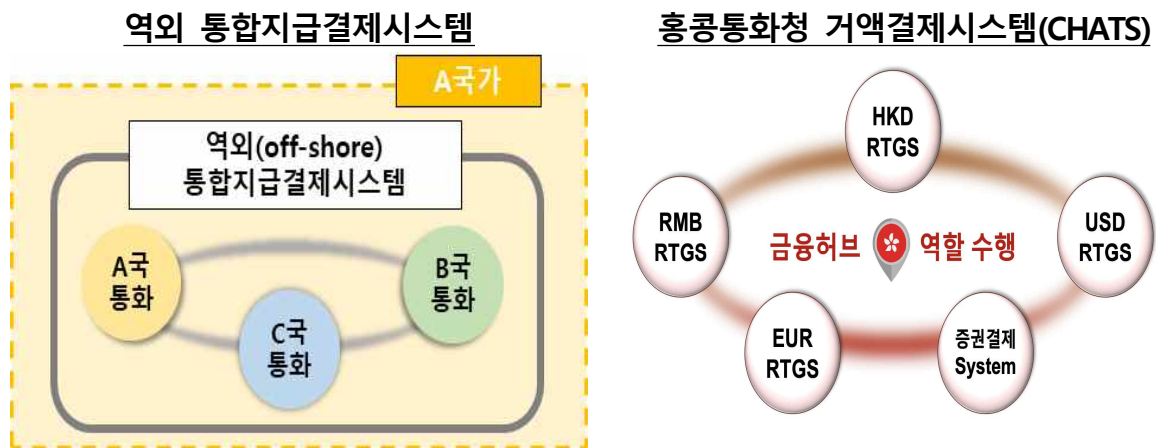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|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각국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분석 ○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을 위한 現 제도 평가분석(CPMI) | 2020.11-2021.4월 |
| (조치2)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모범사례 발굴 ○ 직접 참가 모범사례 발굴 및 공개(CPMI) | 2021.4-2021.12월 |
| (조치3)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자체 평가 실시 ○ 모범사례 대비 자국의 참가제도 자체평가 수행(각 회원국) | 2022.1-12월 |
| (조치4) 참가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○ 각국의 참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(국제기구) | 2022.1월- |

[혁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]

8.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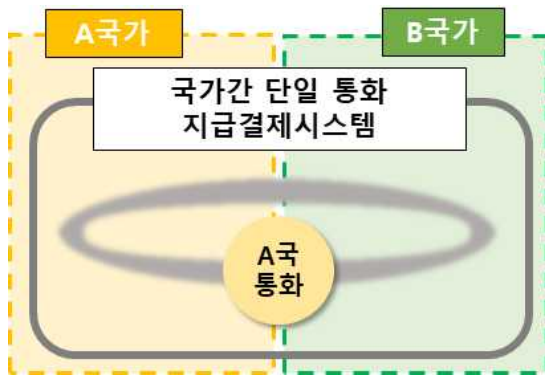
□ (개요) 자국 통화뿐만 아니라 미 달러 등 **외국통화에 대한 최종결제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**하는 복수통화 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추진

- (기대효과) 통화의 최종 결제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자국통화뿐만 아니라 타국 통화에 대해 복수통화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경우
 - 자국 소재 글로벌 금융기관이 해외 결제자금을 본국으로 환류시킬 필요 없이 자금 조달, 환전, 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가능
- (사례) 경제성장에서 금융업 비중이 높거나(예: 홍콩) 역내 지급결제 효율화를 통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추진(예: 아랍지역)하는 나라들이 이러한 복수통화 결제방식을 채택
 - ① (특정국가의 역외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) 한 국가가 자국통화가 아닌 통화로 결제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
 - (HK CHATS) 홍콩통화청은 홍콩달러화, 미달러화, 유로화 및 위안화에 대해 각 통화별로 실시간 총액결제방식(RTGS)의 거액결제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동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외환동시결제를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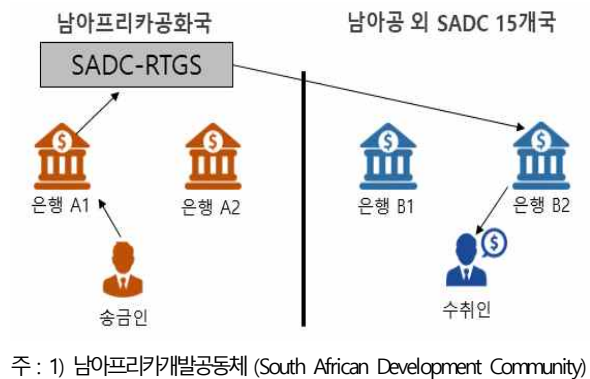


- ② (국가간 단일통화 지급결제시스템) 두 개 이상 국가가 단일통화로 결제를 실행하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경우
 - (SADC-RTGS) 남아공이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허브 지위 유지를 위해 남아프리카 16개국이 참여하는 공동 **랜드화**(남아공 통화) **결제시스템 구축**을 주도
 - 아프리카 지역의 송금 통화로 여전히 달러화 선호도(45.1%, 2017)가 높고 非 남아공 국가의 참가기관은 랜드화로의 수시 환전을 통한 유동성 적립이 요구되어 동 통합 결제시스템 이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

국가간 단일통화 지급결제시스템



SADC¹⁾-RTG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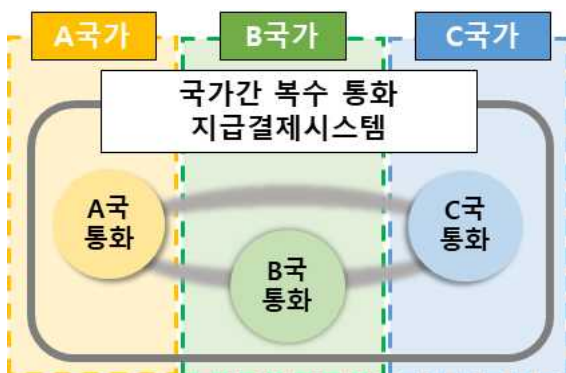
③ (국가간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) 국제기구 또는 복수의 국가가 2개 이상의 통화를 수용하는 통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

○ (AMF의 BUNA) 2020년 아랍통화기금(AMF)이 구축한 복수통화*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참가 통화별로 24시간 실시간 자금이체를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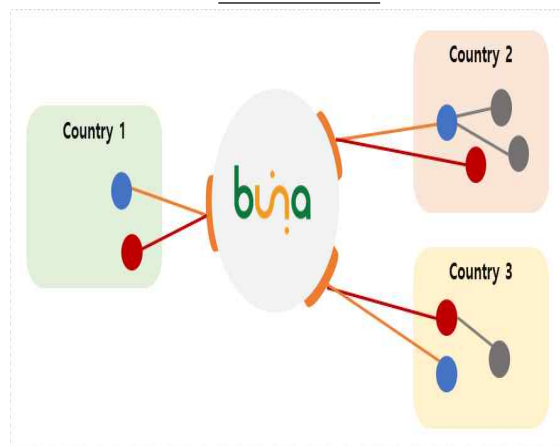
* USD, EUR 외에 아랍 주요 5개국 통화 : AED(아랍에미리트), SAR(사우디), JOD(요르단), BHD(바레인), EGP(이집트)

— 향후 자체 시스템내 이중통화간 환전(FX) 기능도 구축할 예정

국가간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



AMF BUNA



○ (독일 분데스뱅크의 Amplus) 은행 접근성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국외 송금서비스를 지원하는 금융포용 목적의 통합 결제플랫폼 구축을 추진

— (사업 개요) 은행 계좌가 없는 개인에게 휴대폰 번호 등의 고유 인식 번호(Generic Identifier, 예: 휴대전화번호)를 부여하고 동 정보를 통합 결제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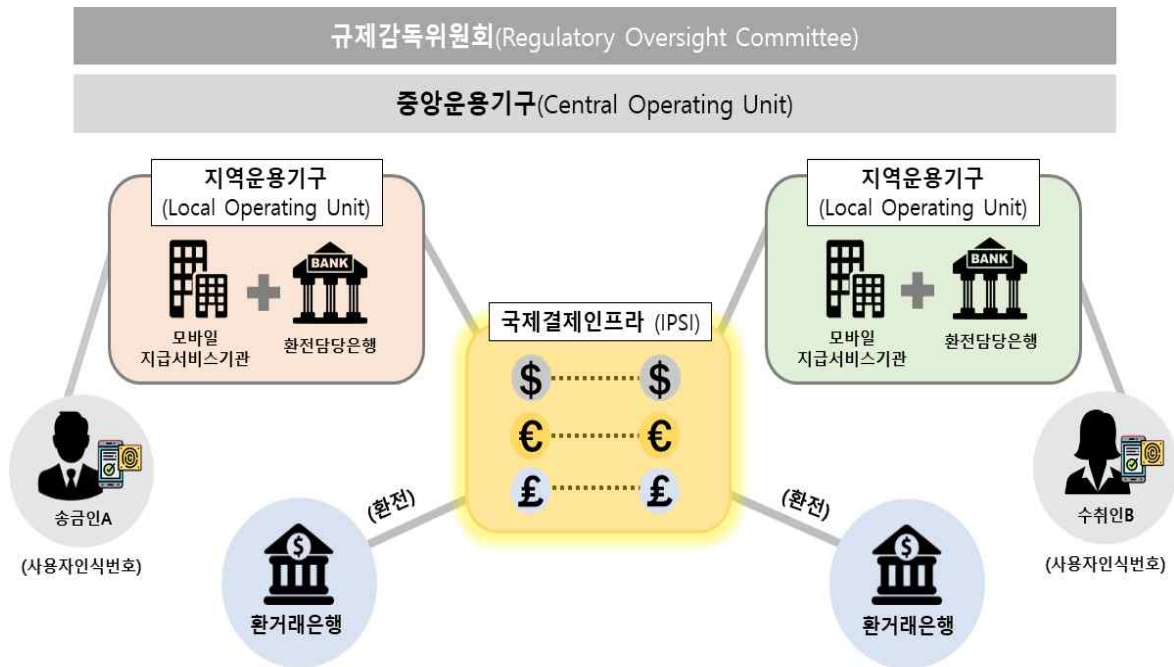
— 저개발국으로의 국외송금 효율성 개선을 위해 독일 분데스뱅크가 **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지급결제 솔루션** 개발을 추진

- 최종 사용자는 모바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 직접 연계된 본인의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
- 독일과 국제기구 등은 사용자 인식번호를 발급하고 **고객신원확인(KYC) 절차를 수행하는 지역 및 국가별 운용기구(Local Operating Unit)**를 설립, 이들을 연계한 **국제지급결제인프라(IPSI)*** 구축을 추진

* 24시간 운영되는 RTGS 기반 결제시스템. 비용 및 시스템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아직 통화간 직접 환전 기능의 탑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 (시장이 수행)

-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고객 신원확인 절차(KYC)의 표준화도 함께 검토

분데스뱅크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(Amplus)



□ (시스템 구축) 짧은 시기에 **집중적인 자금 투자가 필요**한 만큼 시스템 구축을 위한 **참여국간 공조 가능성, 사업 추진의 경제성, 적용가능한 혁신 기술** 등에 대한 **다면적 평가가 필요**

□ (시스템 참여) 아랍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한국 원화의 참여를 적극 검토

- (참여시 기대효과) 달러화 등의 기존 송금 경로 외에 원화 등 기타통화를 이용한 대체 국외 송금경로를 확보함으로써 국외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원화의 국외활용도 제고도 기대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|-----------------|
| <p>(조치1) 복수통화결제시스템 현황 조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글로벌·지역별 시스템 구축 현황 조사를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각 결제 플랫폼의 장·단점, 리스크, 구성 요건 등을 분석 (CPMI, IMF, WB) | 2020.11-2021.7월 |
| <p>(조치 2) 시스템 구축 시의 기대효과, 비용 등 사업타당성 평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제 구축 사례 연구(business case), 플랫폼 구성 요건, 사업 타당성 등을 점검 (CPMI, IMF, WB) ○ BIS Innovation Hub가 추진하는 API 기반 데이터 공유, 결제와 신원확인을 동일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'global stack' 연구 등과의 연계 검토 추진 | 2021.7-2022.6월 |

9.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*

* 향후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를 가정한 미래지향적(forward-looking) 개선방안으로 동 안과 별개로 BIS CPMI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음을 명시

- (배경) 최근 G7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스테이블코인*의 잠재적 이익**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측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

* 법화 등 안정적인 자산에 의해 가치가 담보되는 암호자산

**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에 비해 가치 변동성이 적고(가치안정성) 중개기관의 관여가 적어 송금인과 수취인간의 즉각적인 이체가 가능함(글로벌 통용성)에 따라 국가간 지급서비스에서 주요 대체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대두

-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가 각국 통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, 사용자의 개인 정보보호 등에 미칠 영향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한 **각국 규제방안의 조율 필요성**이 증대

- (개요) 이에 BIS 등 국제기구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**국가간 지급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**에 대비하여 국가간 조화로운 **감시·감독체계 구축 방안**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

-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지배구조(governance) 요건 정립, 자금세탁(AML)·테러자금조달(CFT) 방지를 위한 법적·운영리스크 관리방안 마련, 국가간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

<참고 3>

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례

- **(디엠 <舊 리브라>)** 2020.4월 리브라 협회는 글로벌 단일통화 출시 대신 주요국 각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(예: LibraUSD)을 발행하기로 결정
 - 다만, 스테이블 코인의 국가간 지급서비스 활용을 위해 개별 스테이블 코인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별도의 또 다른 코인(예: ≈Libra) 발행을 계획중

- **(논의 방향)** 신기술 적용이 가져올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**부정적 영향 최소화**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
 -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가간 협조 감시·감독, 국제기준 정비 방안 등을 논의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-|------------------|
| <p>(조치1) 現 現행기준 점검 및 추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검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관해 이미 발표된 FSB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의 기존 규제 기준과 규정 등에 대한 점검 실시 ○ 추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검토 (CPMI, FATF, IOSCO, BCBS등 관련 국제기구) | 2020.10-2021.12월 |
| <p>(조치2) 국가간의 협조 감시·감독 방안을 포함한 국제 기준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간 협조체계 마련 (각국 유관기관) | 2020.10-2021.12월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기준 및 FSB 권고와 부합되도록 각국의 감시·감독 체계 수립 또는 개정을 추진 (각국 유관기관) | 2020.10-2022.7월 |
| <p>(조치 3) 국제기준 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FSB 보고서 등에 담긴 관련 국제 권고사항과 각국이 마련한 감시·감독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국제기준 및 FSB 권고 등의 추가 개정 추진(FSB) | 2022.1-2023.7월 |

10. CBDC 설계 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

- (배경)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며 현금이용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한 지급결제부문의 개선 가능성 검토를 추진
- (개요)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가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BIS는 **CBDC의 국가간 지급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**를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
- (대응 방향) 한국은행은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, 법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2021년중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
 -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|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현황조사 실시 및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국의 CBDC 설계 및 테스트 현황 조사 (CPMI, BIS Innovation Hub, IMF, WB) ○ 국가간 지급서비스에 CBDC를 활용할 경우 국제금융·거시적 측면의 시사점 분석 (IMF) | 2020.1-2021.7월 |
| (조치2) CBDC 접근성 및 CBDC간 연계방안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BDC 접근성 및 연계방식에 대한 검토 실시 (CPMI, BIS Innovation Hub, IMF, WB) | 2021.8-2022.7월 |
| (조치3) CBDC 설계 연구 및 도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멀티(복수통화) CBDC 구현을 위한 기술적 요건 검토 및 테스트 수행 (BIS Innovation Hub) ○ 국제기구간 정보공유 회의 개최 (BIS, IMF, WB)) | 2022.1-2022.12월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국의 CBDC 도입 기술지원 (IMF, WB) | 2022.7월-(이후 계속) |

V

향후 조치 및 계획

- (업무추진 그룹 참여) BIS CPMI(지급결제위원회)와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년부터 개별 국가간 지급서비스 프로젝트(10개)의 본격적인 추진을 주도할 6개의 업무추진 그룹(workstream)*을 발족

* ① 지급결제 연계, ② 외환동시결제, ③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, ④ 유동성 공급, ⑤ 통신메시지 및 API 표준화, ⑥ 지급결제의 미래

- 한국은행도 CPMI의 정회원으로서 이번 업무추진 그룹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각 프로젝트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내 유관기관과 관련 업계 등과 적시에 공유할 계획

- (공개 컨퍼런스 개최) BIS는 각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금년 3월 시장, 학계,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공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

- 각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가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연구 결과, 이와 관련한 각종 정책분석 결과 등을 발표

- 일자 : 2021.3.18(목)-19(금)

- 주제 : “Pushing the frontiers of payments : towards a global payments area”

- 신청방법: <https://biscpmi.navus.io/947/page/home> 링크를 통해 신청

<별첨 1>

환거래은행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

□ 최근 기존 **환거래은행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** 이루어지고 있음

○ (2016 CPMI 권고 이행) 2016년 BIS CPMI는 환거래은행의 국가간 지급 거래 업무수행 시 AML/CFT, 고객 신원확인 의무 등 각종 규제 compliance 업무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

— 외국환거래 고객의 신원정보(KYC) 확인절차의 표준화 및 관련 정보의 공유 기준 명확화, 법인식별기호(LEI)* 도입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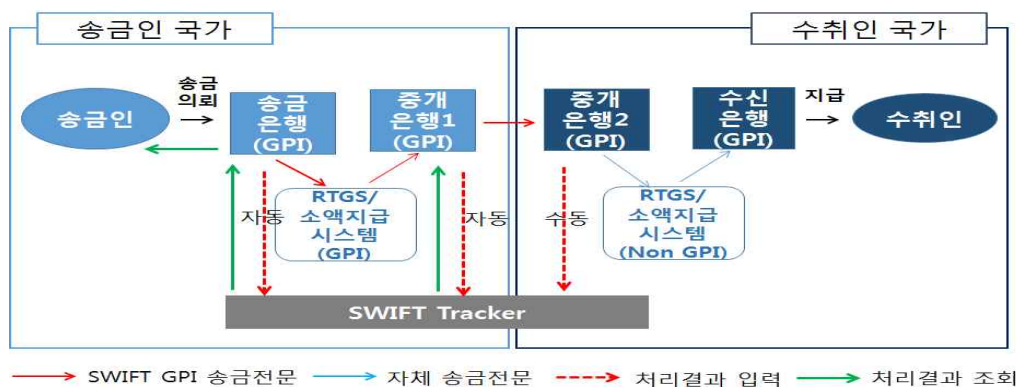
* 각종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기호로 자세한 내용은 <별첨 3> "9. 금융거래 상대방 고유 식별기호 도입" 참조

○ (SWIFT's global payments initiative) 글로벌 환거래은행간 전문을 처리 하는 SWIFT는 최근 환거래은행이 수행하는 국제 송금 프로세스를 고객이 국제 배송서비스와 같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(SWIFT gpi)를 지원

— 전문에 거래식별번호를 추가하고 전문의 송금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 (Tracker)에 기록되도록 하여 송금고객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송금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 ⇒ 송금 처리 투명성 제고

— GPI 서비스 가입 은행에게 GPI 전문 수신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여 송금 처리 속도도 개선

GPI를 활용한 국가간송금 정보 흐름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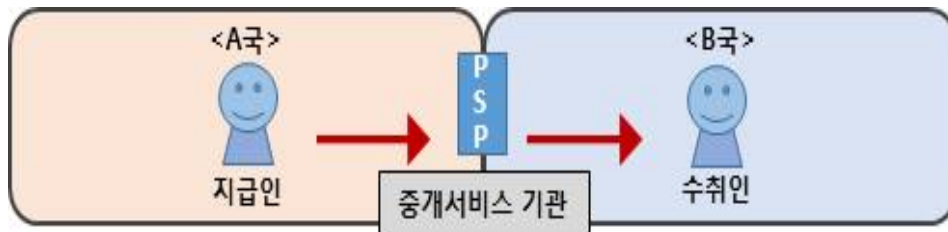
<별첨 2>

글로벌 송금 프로세스 혁신 모델

□ BIS는 기존 환거래은행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송금 프로세스 혁신 모델을 소개 (BIS, "Shaping the Future of cross-border retail payment", 2019.8)

- ① (단일 중개기관(Closed-loop) 모델) 지급인에서 수취인까지의 자금흐름 프로세스를 단일 중개기관이 자체 관리원장에 기록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중개기관 수가 줄어 처리 효율이 크게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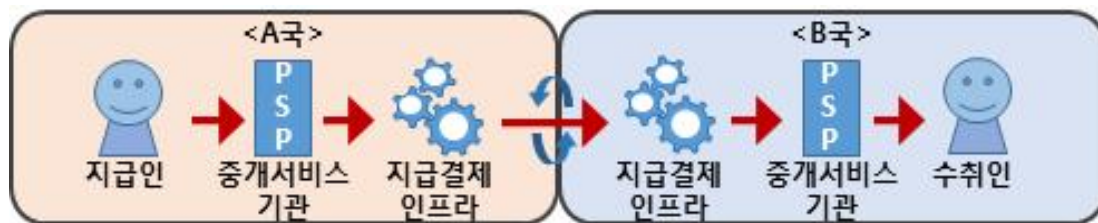
단일 중개기관 모델



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미국 **Paypal**, 중국 **Alipay** 등이 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, 소액 해외송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**Transferwise** 등의 핀테크 기업들도 동 모델을 이용

- ② (지급결제인프라 연계(Interlinking) 모델) 두 국가의 소액 또는 거액결제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환거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지원

국가간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모델



— 18개국 거액결제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여 두 통화간 동시결제를 지원하는 외환동시결제(Continuous Linked Settlement)시스템, 홍콩달러 이외에 미 달러화 등 외국통화와의 연계 결제를 지원하는 **홍콩 거액결제시스템 (CHATS)** 등이 동 모델을 이용

— 최근 각국 중앙은행은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타국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과 겹치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추세

③ (지급인-수취인간 직접 이체(Peer-to-peer) 모델) 지급인이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하여 발행된 토큰형 암호자산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중개기관의 일체 관여 없이 자금이체를 구현 (예: 리플, 리브라 등)

지급인-수취인간 직접 이체 모델



— 다만, 암호자산은 자산가치 변동성이 높아 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각 국에서 규제 강화 논의가 증가

⇒ 이러한 다양한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비효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은행과 공공 부문도 민간이 주도하는 소액 지급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

<별첨 3>

국제기구(FSB) 주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

1.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

□ (개요)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총 18개 개선방안의 **성과목표(target)** 및 **성과측정 지표(KPI)**를 **설정**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
- 전체 목표 및 성과지표는 ‘지역별 해외송금 평균 비용’과 같이 국가간 지급의 **4대 문제점**(비용, 속도, 접근성, 투명성)의 개선 정도를 나타낼 **직관적 지표**로 설정될 전망

| 단계별 조치 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(조치1) 공동의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합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량적 목표(target) 설정을 위한 국제 논의 진행 (FSB CPC)* ○ 2021.5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민간 대상 공청회 개최 (public consultation) | 2020.10-2021.5월 |
| <p>(조치2) 각 회원국의 책임성(accountability) 제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선방안의 달성 목표(target) 승인 (G20) | 2021.8-10월 |
| <p>(조치3) 목표 달성 현황 점검을 위한 통계 분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측정지표(Key Performance Indicator)의 달성 현황 모니터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목표달성 현황의 G20 재무장관·총재 회의 앞 보고 (FSB CPC) | 2021.10월-2022.6월 (이후 매년) |

* () 내 기관명은 해당 조치의 추진 주체 - 이하 동일

2.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정비 및 이행 감시 강화

□ (개요)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(PFMI),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기준 등 국가간 지급서비스와 관련된 **국제기준의 실제 적용 및 이행 현황** 조사를 실시

-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**규제 가이드 라인**을 개선하고 신규 기준에 따른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

| 단계별 조치 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|-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글로벌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現 국제기준 검토 ○ 국가간 지급서비스 관련 現 국제기준의 적용 및 이행 현황 조사를 통해 개선 필요부문 파악 → 개선방안④의 조치1과 공동 (FSB) | 2020.10-2021.10월 |
| (조치2) '국제기준 이행 모니터링' 강화 ○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해 '국제기준 이행 모니터링'의 강화가 필요한 분야 선정 (FSB) | 2021.11-2022.4월 |
| ○ 선정된 분야에 대한 1차 모니터링 실시 협의 (FSB) | 2022.4-11월 |
| ○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필요 분야 파악 (IMF, World Bank) | 2022.11-2023.6월 |

3. 국가간 지급서비스 수준 표준화 추진

- (개요)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의 **공통 요소**를 사전에 **정의**하고 국가별, 권역별로 상이한 **데이터 및 메시지 처리 기준, 컴플라이언스 절차 등을 표준화**하여 **지급서비스 절차의 효율화**를 촉진

| 단계별 조치 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-|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現 글로벌 지급서비스 수준 계약의 공통 요소 파악 ○ 서비스공급자 및 글로벌 표준기구 등과 협력하여 현재의 다자간 서비스 수준 계약을 분석하고 국가간 지급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한 공통 요소를 파악 (BIS CPMI) | 2020.11-2021.8월 |
| (조치2) 국가간 지급서비스 수준의 공통 요소에 대한 자체 평가(Self-Assessment) 체계 마련 ○ 서비스 공급업자들이 국가간 지급서비스 계약의 공통 요소에 대해 자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마련 (CPMI) | 2021.9-2022.8월 |
| (조치3) 新 서비스 수준 표준계약서 도입 ○ 공통 요소를 반영하여 지급서비스 수준에 관한 新 표준 계약서 도입 (CPMI) | 2022.8-2023.3월 |

4. 규제 체계간의 일관성, 상호연계성 강화

- (개요) 국가간 지급서비스 수행기관의 컴플라이언스(규제 준수) 업무 부담을 축소하고 업계간 **공정 경쟁**을 담보*하기 위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**규제 체계의 상호호환성 및 일관성 강화**를 추진

* same activities, same risks, same rules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|-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現 국가간 지급서비스 감시 및 감독 관련 국제기준의 일관성 제고 방안 검토 ○ 국제기구별로 차별화된 現 국가간 지급서비스 관련 국제기준의 일관성 및 상호연계성 증진 방안 검토 (FSB) → 개선방안 ②와 함께 추진 | 2020.10-2021.10월 |
| (조치2) 국제기준의 일관성 강화 방안 제정 ○ 국제기준간 연계성 강화방안 검토 착수 (관련 국제기구, FSB) | 2021.10-2022.3월 |
| ○ 현행 국제기준간 연계성 강화 보고서 발표 및 공청회 개최 (관련 국제기구, FSB) | 2022.3-2023.3월 |
| ○ 현행 국제기준간 차이, 추후 연계 필요부문 등에 대한 대책 수립 (각국 유관기관) | 2022.3-2023.9월 |

5. AML/CFT 규제 적용방식의 일관성 제고

- (개요) 국가별, 권역별로 해석 및 적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AML/CFT 규제의 국제적 일관성을 제고
 - 국가간 지급서비스에 보다 통일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의한 **규제차익 추구를 방지**하고 업계의 컴플라이언스 **규제준수 비용 감축**에 기여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|-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국가별로 상이한 AML/CFT 및 KYC 관련 점검 내용의 조화 방안 마련 ○ 국가간 규제 적용방식의 조화를 통한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효과 검토 (FATF, BCBS) | 2020.10-2021.10월 |
| (조치2) 각국의 고객확인(Customer Due Diligence) 조치 및 감독 프로그램 비교 평가 | 2020.10-2021.10월 |

| | |
|--|-----------------|
| ○ 각국의 고객확인 조치 및 감독 내용에 대한 상호 비교 평가 체계 마련 및 동 체계에 따른 평가 실시 (FATF) | |
| (조치3) AML/CFT 감독의 국가간 공조 강화 ○ AML/CFT 국제 공조 가이드라인 마련 (FATF) | 2021.10-2022.6월 |
| (조치 4) AML/CFT 적용방식의 표준화를 위한 혁신 솔루션 개발 ○ AML/CFT 적용방식의 표준화를 위한 혁신 솔루션 개발 및 기준안 마련 (FATF, 유관기관) | 2021.10-2022.6월 |

6. 국가간 지급서비스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

- (개요)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 과정에서 송금인, 지급인 등 **개인정보 데이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공유체계**를 마련
 - 국가별 **개인정보 규제 체계**간 개인정보의 호환 가능성을 높여 **컴플라이언스 절차의 효율화**에 기여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-|------------------|
| (조치1) 국가간 지급 관련 데이터 흐름을 제약하는 각국의 데이터 규제 조사 ○ 국가간 지급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데이터 규제간 비교분석 실시 (FSB, CPMI 등) | 2020.10-2021.12월 |
| (조치2) 국가간 지급서비스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규제·감독 체계의 개선(adaptation) 추진 ○ 공청회 등을 통해 국가간 지급 정보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권고안(recommendation) 마련 (FSB) | 2021.12-2022.12월 |
| ○ FSB 권고안에 따라 국가간 지급정보의 감시·감독과 관련한 국제기준 수정 (관련 국제기구) | 2022.12-2023.12월 |
| ○ FSB 권고안 및 수정된 국제기준에 맞춰 자국 규제체계 개정 (각국 감독기관의 필요시) | 2023.12-2024.12월 |
| (조치3) 新 국제기준 및 규제체계 적용 ○ 새로운 국제기준 및 규제체계 적용에 따른 시장 참여기관의 시스템 변경 (관련 국제기구, 각국 감독기관은 시장 이행상황 모니터링) | 2025년 |

7. 안전한 지급경로(corridor)의 발굴과 장려

□ (개요) 일부 특수한 지급경로*에 대해 IMF 등 국제기구, 국가별 규제기관 등이 **AML·CFT 측면의 리스크 평가**를 실시하고 **안전한 지급경로**를 권장

* 송금인과 수신인 사이에 국가간 지급 수행을 위해 이용되는 특정 수단, 제도, 시스템 등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**일반 환거래은행 모델이 정착하기 어려운 특수 지역의 국가간 송금 및 수신 경로**를 의미

○ (배경) 최근 글로벌 환거래은행의 **디리스크(de-risking)*** 추이가 확대되면서 남태평양 섬나라 국가 등에서 **음성적 송금 경로 이용**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**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위반 우려**가 증대

* 글로벌 은행들이 사업 수익성 대비 투자비용이 크거나 손실 리스크가 높은 환거래계약을 중단하는 사례를 의미. 최근 사모아 등 작은 섬나라 송금기관과 은행간 환거래계약 해지 사례가 급증하면서 호주에서 남태평양 국가로의 송금비용은 약 12% 까지 증가(IMF)

○ 중장기 시계에서 특수 지역 지급경로 참여 기관의 **규제준수비용**을 낮추고 **시장경쟁을 촉진**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|-----------------|
| <p>(조치1) 국가간 지급경로(payment corridor) 리스크 평가 체계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호주-남태평양 지역간 송금 경로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별 지급경로의 리스크 평가 방법론 및 위험수준 판단기준 마련 (IMF, WB, FATF, 각국 유관기관) — 각국 규제기관간 MOU 등을 통해 지급경로 안전성을 뒷받침할 데이터 교환 및 정보공유 체계 수립 | 2020.10-2021.7월 |
| <p>(조치 2) 低위험 지급경로 발굴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리스크 pilot 평가 실시 및 결과 발표 (자원국 기준) | 2021.8-2022.3월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범 실시결과 영향 분석 및 추후 계획 수립 (자원국 감독당국) | 2022.4-9월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급경로 리스크의 평가체계 표준 확정 (합의시) (IMF,WB,FATF 등 국제기구) | 2022.12월 |

8. 고객식별 및 확인 정보의 국가간 공유체계 마련

□ (개요) 국가간 지급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**고객식별 및 확인 절차(KYC, CDD)**의 **표준화**, 동 절차의 국가간 **상호호환성 확대** 등을 통해 **국가간 송금 프로세스의 효율화 및 비용 감축을 추진**

○ (해외 사례) 2018년부터 남태평양 지역 9개 중앙은행과 IMF, WB등의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'고객 식별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(KYC facility)' 설립을 검토중

—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요건, AML/CFT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을 확립하는 등 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|------------------|
| <p>(조치1) 고객 식별 및 확인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ID체계 수립 및 국가간 상호 인증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객 확인을 위한 국가별 ID 체계의 상호 인증 추진 (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) | 2020.10-2023.6월 |
| <p>(조치2) 고객 ID 데이터베이스의 수립 및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디지털 ID 체계 수립 및 상호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별, 국가별 격차(gap)를 파악하고 규제 개선, 기술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방안 강구 (WB) | 2020.10-2022.12월 |
| <p>(조치3) 국가간 정보접근성(access) 및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이 보장되는 고객확인(CDD) 인프라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객정보 확인(CDD)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행 (지원하는 국가) | 2020.10-2021.12월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프로젝트 수행결과를 토대로 역내 국가간 활용이 가능한 고객정보 확인(CDD) 인프라 실제 구축 | 2021.12-2023.6월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객정보 확인 공동 인프라가 갖춰야 할 기술적, 법적 요건 확립 (FSB) | 2023.6-2023.9월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 참여기관의 동 인프라 사용 촉진을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(각국 감독기구 등) | 2023.9-2024.9월 |

9. 금융거래 상대방 고유 식별기호 도입

- (개요) 글로벌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개인과 법인의 확인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**글로벌 금융거래 당사자에 대한 디지털 식별 코드**(global unique identifier) **공유 시스템**(structure) 구축을 추진
 - 2012년 도입된 법인의 '**고유 식별기호(Legal Entity Identifier)**'를 더욱 확장한 개념으로 글로벌 지급서비스 참여자에 대해 국제 공통 식별기호의 생성과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

<참고>

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* Foundation

* **법인식별기호(LEI : Legal Entity Identifier)** : 각종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 ID 체계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20자리 알파벳·숫자로 구성됨. '11년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이후 '1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도입 시작

□ **설립** : 2014년 6월에 FSB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바젤에 본부 위치

□ **성격 및 역할** : 초국가적 비영리단체로 세계 **LEI 발행기관**(Local Operating Units) 인증, LEI 운영 총괄 및 사용 촉진, **글로벌 LEI 색인**(Global LEI Index)* 제공

* LEI를 발급받은 글로벌 금융기관 정보와 국가별 가입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데이터

— 한국은 **예탁결제원이 '14년 LEI 발행기관 인증**을 받아 국내에서 LEI를 발급*

* 현재 국내에서 LEI를 발급받은 법인은 총 1,479개로('20.10월 기준) 전세계 이용기관의 0.08% 차지

— 한편 FSB는 LEI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해 69개 금융감독당국(한국은 금융위와 당행 금융안정국)과 4개 국제기구(FSB, IOSCO, CPMI, CGFS)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LEI 규제감독위원회(LEI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)를 별도 운영

— 금융거래 상대방 식별기호의 국제적 일관성 제고를 위해 거래기관의 국가별 계정 정보와 글로벌 고유 식별기호를 연계하는 '**분산형 식별기호 연계시스템**' (decentralized proxy registry) 도입도 함께 추진

○ (기대효과) 글로벌 공통 식별 체계를 통해 지급인과 수취인의 **신원확인 비용** 및 **소요시간**을 절감

| 단계별 조치계획(Action Plan) | 추진 일정 |
|---|---|
| <p>(조치1) 現 식별기호에 대한 분석을 거쳐 글로벌 디지털 식별기호(법인, 개인) 도입 필요성과 요건을 점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글로벌 디지털 고유 식별기호(unique identifier) 가능성 모색 (FSB/CPMI, IMF, WB, GLEIF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지급 정보와 고유 식별기호간의 연결 메커니즘 연구 — FATF 등 국제기구의 기존 연구결과 반영 — 글로벌 디지털 고유 식별기호와 기존 식별기호간 맵핑(mapping) 방안 마련 | <p>2020.10-2021.12월</p> |
| <p>(조치2) 디지털 고유식별 기호 체계 및 분산형 식별기호 연계 시스템 도입 장려방안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글로벌 디지털 식별기호 도입 장려방안 검토 (FSB, GLEIF, LEI 규제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, 각국 중앙은행) ○ 고유 식별기호 proxy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및 요건 정의 수립 (FSB, CPMI, IMF, WB, ISO) | <p>2021.6-2022.6월</p> <p>2021.12-2022.10월</p> |
| <p>(조치3) 도입 및 진행현황 모니터링(필요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별기호(UI) 거버넌스 및 국가별 데이터베이스 연계 추진 (FSB) ○ 식별기호(UI) 관리기관(governance body)의 거래자(기관) 등록 시작 ○ 각 회원국별로 글로벌 디지털 식별기호 도입 검토 및 기존 체계와의 연계 방안 검토 (각 회원국) | <p>2022.10-2023.10월</p> <p>2023.10-2024.10월</p> <p>2021.12-2022.10월</p> |